

# 2022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 공고

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(매립장, 소각장, 리사이클링타운)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31.



## 1. 지원대상

- 지원목적 :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
- 지원범위 :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마을 거주 가구
  -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 
(대문안, 삼산, 안산, 장동, 대야, 원이성, 신정, 원상림, 월선, 안심, 능안, 원금평, 중앙반, 목련, 호동, 자구실, 오산, 금천, 신덕, 양석, 삼태 마을)
  -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(삼산마을)
  -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(장동·안산·삼산마을)
- ※ 기금지급(예정)액 : 매립장 380백만원, 소각장 570백만원, 리사이클링 570백만원
- 지원내용 : 가구별 현금 지원

## 2. 지원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6. 9. ~ 7. 8.
- 신청대상 :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1년 이상 실거주 가구
  - \* 2020년 12월 31일 이전, 주변영향지역에 전입신고한 실거주 가구
  - \*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원칙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작성), 동일주소지 내 가구별 1세대 신청
  - \*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“주민등록표초본” 기준
- 접수처
  - 전주시 거주 : 거주지 동주민센터(삼천3동, 효자4동)
  - 김제시·완주군 거주 : 거주지 시·군 행정복지센터(금구면, 이서면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우편(E-mail) 접수
  - 전자우편 발송 후 전화 확인
    - 매립장, 소각장, 리싸이클링 : lyk1564@korea.kr / ☎ 281-8451
- 제출서류
  - [서식 1]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서/ [서식 2] 개인정보제공 동의서/ 보상자 주민등록표초본/ 신분증 사본/ 통장 사본/ 건축물대장(신규보상자)/ 임대차 계약서(세입자) 사본 / [서식 3] 위임장(대리신청시)
- 지원제외
  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1년 미만 거주자(2021. 1. 1. 이후 전입신고자)
  - 실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
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 확인된 가구
  - 공공시설(병원, 학교, 요양원 등), 사업체(법인 및 개인 사업체 등)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, 병원입원 등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가구
  - 기타 관련법이나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구

### 3. 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

#### 1) 대상자 선정방법

-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의결을 통해 대상자로 지정된 후,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한 자, 1년이상 실거주 누락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별도 협의
- 김제시·완주군 소속 주민은 관할 지자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최종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명단을 전주시에 통보, 결정된 명단에 한하여 기금지급
- 신청자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최종 협의하여 대상자 확정

2) 기금 지급기준 : '22년도지급(20.12.31이전 실거주 주민)은 종전 정관에 따라 차등지급

매 립 장		소 각 장		리싸이클링	
거 주 기 간	보상률(%)	거 주 기 간	보상률(%)	거 주 기 간	보상률(%)
1년 이상 ~ 5년 미만	50	1년 이상 ~ 3년 미만	50	1년 이상 ~ 3년 미만	50
5년 이상 ~ 10년 미만	70	3년 이상 ~ 5년 미만	70		
10년 이상	100	5년 이상	100	3년 이상	100
세입자 : 보상금의 50%		세입자 : 보상금의 50%			

\* 매립장 광역별 차등

- 1광역 100% : 삼산, 대문안, 장동, 안산 마을
- 2광역 85% : 대야, 원이성, 신정, 원상림, 월선, 안심, 능안
- 3광역 70% : 원금평, 중앙반, 목련, 호동, 자구실, 오산, 금천, 신덕, 양석, 삼태

3) 지급방법 : 전액 현금 신청자 계좌입금

## 4. 기타 및 유의사항

- 기금지급 관련, 주민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송진행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결정금액을 기금지급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당사자에게 우선 차감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해연도 기금 지급대상자에게 분배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전주시 자원순환과 (☎ 281-8451, 8454)
  - 김제시 청소자원과 (☎ 540-3778)
  - 완주군 환경과 (☎ 290-2674)

- 붙임 1.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서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.  
3. 위임장 1부. 끝.